

해방후 프랑스의 대독협력 공직자 숙청*

이 용 우

숙청위원회의 대상과 권한은, 직원 정관이 규정한 여타의 징계위원회들의 대상 및 권한과 전혀 다른 것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청위원회가 다루는 과실(過失)은 행정적 의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애국적 의무의 불이행입니다.

- 쉐ن 지사가 교외 코뮌들의 해방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보내는 공문 중에서(1944년 9월 15일)¹⁾

정부는 국가공무원의 대다수를 갑자기 제거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점령과 강탈의 끔찍한 몇 년 동안 무엇보다도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 드골 장군, 1944년 7월 25일²⁾

행정숙청은, 전쟁 전에 유럽에서 제일 가는 집단 가운데 하나였고 능력, 용기, 무사공평함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체제를 구제해준 프랑스의 공무원 집단을 파괴해버렸다.

- 극우 잡지 『서방의 수호』(1957년 1-2월호) 중에서³⁾

- | | |
|----------------------------|---------------------------|
| I. 머리말 | IV. 숙청자의 숙청: 지사, 판검사, 경찰 |
| II. 법적 토대: 1944년 6월 27일 명령 | V. 일상적 부역에 대한 징계: 쉐나르의 사례 |
| III. 규모의 문제 | VI. 맺음말 |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1-A00077).

1) *Bulletin municipal officiel de la Ville de Paris*, 16-17 septembre 1944.

2) Charles de Gaulle, *Mémoires de guerre*, t. II, *L'unité 1942-1944* (Librairie Plon, 1956), p. 584.

3) "L'épuration administrative", *Défense de l'occident*, n° spécial, n° 39 (janvier-février 1957), p. 94.

I. 머리말

‘비시(Vichy) 시기’로도 불리고, ‘강점기’로도 불리고, 다소 무미건조하게 ‘2차 대전기’로도 불리는 1940-44년은 프랑스인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 무엇보다도 ‘암울했던 시절(les années noires)’이었다. 국토의 절반 이상(1942년 11월부터는 전부)을 외국 군대에 점령당하고, 전 국토와 국민에 대한 온전한 통치권과 행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직 나치 독일에 대한 ‘협력’이라는 조건에서만 주권이 유지되었던 시기만큼 치욕적이고 억압적이었던 시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 시기가 끝나고 반세기가 지나고도 여전히 ‘비시’나 ‘협력(collaboration)’⁴⁾, ‘부역자(collabo)’ 같은 용어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스캔들과 공분(公憤)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러한 시기의 전례 없는 성격에 기인하는 바일 것이다.

프랑스관 과거청산에 해당하는 ‘숙청(épuración)’은 바로 이러한 시기가 종료되고 국내외의 항독세력이 주축이 되어 지난 4년간의 대독협력세력을 처벌한 것을 가리킨다. 대독협력의 형태가 다양했던 만큼 숙청의 형태도 다양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레지스탕스 대원들에 의한 약식처형이나 여성 부역자에 대한 공개사발식 같은 ‘초법적 숙청’이었고, 이어서 대표적인 숙청이라 할 ‘사법적 숙청’, 즉 해방직후에 설치된 재판소들에 의한 부역자 재판이 이루어졌다.⁵⁾ 그밖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인 ‘행정적 숙청’, 페탱(Pétain) 원수에게 전권(全權)을 부여하는 데 표를 던졌던 상하원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정치적 숙청’, ‘불법이윤몰수위원회’나 ‘업종간숙청위원회’가 기업가, 노동자, 사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경제적 숙청’이 벌어졌다. 또한 노동조합들은 비시 정부의 정책에 동조했던 노조 간부들을 각 정당들은 친독, 친비시 활동을 했던 정당 간부들을 자체 숙청했고, ‘전국작가회의’는 발표금지작가명단을 작성했다. 한마디로 사회 전체가 숙청에 들어간 셈이었다.

4) 1940년 10월 30일 페탱의 대국민성명 이후 보통명사에서 ‘2차 대전기 적국에 대한 협력’이란 뜻의 역사적 용어가 된 단어로, 우리말로 ‘협력’ 외에 ‘대독협력’, ‘부역’으로도 옮길 수 있다. 본고에서도 이 용어들을 맥락에 따라 혼용했음을 밝혀둔다.

5) 이에 대해서는 이용우, 「초법적 숙청과 사법적 숙청: 해방후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 『역사학보』 제181집(2004년 3월)을 보라.

본고는 이 중에서도, 사법적 숙청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행정적 숙청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암울했던 시절(1940-1944)’에 공직을 수행했던 이들로 말하자면, 1940년 10월 페탕의 ‘협력’ 선언 이래, 아니 사실상 6월의 휴전협정 체결 이래 ‘국가적 협력(collaboration d’État)’이 비시 정부의 공식 정책이자 존재이유였으므로 그 기간에 공직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도 “적의 사업을 도와준”(1944년 6월 27일 명령 제1조) 행위에 해당했다. 그러면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현직 공무원 모두를 면직할 것인가? 그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서두에 인용했듯이 일찍이 1944년 7월 25일부터 임시정부 수반 드골 장군은 ‘국가공무원의 대다수를 제거하자는 게 정부의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과 규모로 행정숙청이 이루어질 것인가?

행정숙청의 문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비시 정부 자체의 ‘합법성’에 있었다. 1940년 7월 10일 상하원의원들이 찬성 569표, 반대 80표, 기권 17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비시 정부의 수반 페탕 원수에게 전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렇듯 형식상 ‘합법적’으로 탄생하고 국민 대다수—공무원 자신들을 포함한—도 그렇게 생각한 비시 정부에 속해서 공무를 수행한 이들을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우선, 행정숙청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1944년 6월 27일 명령과, 숙청이 이루어진 전반적인 규모의 문제를 살펴보고, 각 부문의 구체적인 숙청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숙청자의 숙청’과 일상적 공직부문에서의 숙청으로 나누어서 논의할 것이다. ‘숙청자의 숙청’으로는, 비시 시기에 가장 억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부문이자 앞으로 숙청업무를 담당할 부문에 속하는 도지사, 판검사, 경찰에 대한 숙청을 살펴볼 것이고, ‘일상적 공직부문’으로는 센(Seine) 도의 도청이 관할하는 각 관공서들과 공기업들에서 벌어진 숙청을 고찰할 것이다.

II. 법적 토대: 1944년 6월 27일 명령

해방후 프랑스에서 대독협력 공직자에 대한 각종 징계는 기본적으로 ‘1944년 6월 27일 명령’⁶⁾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그 명령은 “프랑스 본토에서의

6) 이 명령의 원문은 François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행정숙청에 대한” 것으로, 드골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1944년 6월 6일) 이후 본토의 해방 전투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공포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전날 ‘부역자 재판소’의 설치를 규정한 6월 26일 명령, ‘국치죄’를 도입한 8월 26일 명령, ‘최고재판소’의 설치를 규정한 11월 18일 명령과 함께 임시정부가 부역자 숙청작업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포한 4대 명령에 속한다. 6월 26일, 8월 26일, 11월 18일의 명령들이 ‘사법적 숙청’을 규정한 것이라면 6월 27일 명령은 ‘행정적 숙청’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 명령이 규정한 행정숙청의 대상이 되는 이는 제1조에 따르면 “1940년 6월 16일 이후⁷⁾ 행위나 문서나 직업상의 태도를 통해”

- 1) 어떤 종류의 사업이든 적의 사업을 도와주거나
- 2) 프랑스와 그 동맹국들의 전쟁 수행을 방해하거나(특히 밀고를 통해)
- 3) 입헌적 제도들이나 기본적인 공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 4) ... 사실상의 권력체⁸⁾의 규정들을 적용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직접적인 물질적 이득을 얻었거나 얻고자 한

“현직 혹은 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었다.⁹⁾ 사실, 행정숙청의 대상이 되는 이상의 4가지 행위는 본토에 앞서 연합군이 1942년 11월 북아프리카 지역에 상륙하고 나서 임시정부의 전신(前身)인 ‘프랑스 국민해방위원회’가 북아프리카의 프랑스로 지역을 대상으로 포고한 ‘1943년 8월 18일 명령’에 명시되었던 것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다.¹⁰⁾ 또한 ‘적의 사업을

(CNRS Éditions, 1993), pp. 273-276; Marc Olivier Baruch (dir.), *Une poignée de misérables. L'épuration de la société française après la Seconde Guerre mondiale* (Fayard, 2003), pp. 567-569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말 번역본은 〈역사와 기억: 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의 국가별 사례 연구〉 사이트(<http://past.snu.ac.kr>)의 연구팀별 자료 〈프랑스〉 번역자료 (16)에서 볼 수 있다.

- 7) 1940년 6월 16일은 폴 레노(Paul Reynaud)가 총리직을 사임하고 페탱 원수가 그 뒤를 이은 날이다. 페탱은 다음날 새 내각을 구성했다.
- 8) 비시 정부를 가리킨다. 비시 정부의 합법성을 부인한 드골의 임시정부는 각종 법령에서 그 정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실상의 권력체’(l'autorité de faits)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 9)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p. 273.
- 10) Peter Novick, *The Resistance versus Vichy. The Purge of Collaborators in Liberated Fr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p. 50.

도와준' 행위라든가 '프랑스와 그 동맹국들의 전쟁 수행을 방해한 행위'라는 규정들은 사법적 숙청에 대한 1944년 6월 26일 명령(제1, 2조)과 8월 26일 명령(제1조)에서 기본적인 처벌대상으로 규정된 것과 거의 유사하다.¹¹⁾

한편, 6월 27일 명령이 규정하는 행정숙청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통상적인 의미의 '공무원'이나 '공직자'를 훨씬 넘어선다. 즉,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공무원, 사무원, 노동자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얻는 모든 기구의 직원,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사업권이나 특권을 부여받은 모든 기업의 직원, 그리고 모든 계급의 군인까지 행정숙청의 대상에 포함되었다(제2조).

그러면 '행정숙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각 부의 장관(당시의 명칭은 '위원')이 제 2조에서 규정된 행위를 한 공직자를 즉각 정직(停職)시킬 수 있음을 의미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기간 동안 봉급을 절반만 받을 것이었다(제3조). 이러한 일종의 비상조치 외에도 본 명령은 다양한 종류와 정도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숙청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파면(연금 없는 면직)이나 해임(연금을 받는 면직), 무기한 정직, 군대 간부직 박탈, 직권퇴직 등의 중징계에서 일시 정직, 휴직, 강등, 인사이동, 연금지급중지 훈장폐용금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었다(제4조).¹²⁾

이 명령의 선구를 이루는 1943년 8월 18일 명령이 프랑스 국민해방위원회 산하에 '숙청위원회'를 둘 것과 그 위원회가 부역혐의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각종 징계를 관할 부(部) 위원(장관직에 해당)에게 권고할 것을 규정한 데 비해,¹³⁾ 1944년 6월 27일 명령에서는 '숙청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단지, 제1조에 명시된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릴 권한도, 인사이동에서 파면에 이르는 각종 징계를 내릴 권한도 해당 부 장관에게 있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11) 1944년 6월 26일 명령의 원문은 Baruch (dir.), *Une poignée de misérables*, pp. 564-566에, 8월 26일 명령의 원문은 *Défense de l'occident*, n° 39 (janvier-février 1957), pp. 27-31에 각각 수록되어 있고, 우리말 번역본은 〈역사와 기억〉 사이트 (<http://past.snu.ac.kr>)의 연구팀별 자료 〈프랑스〉 번역사료 (13)과 (14)에서 볼 수 있다.

12)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pp. 273-274.

13) Novick, *The Resistance versus Vichy*, p. 50; Robert Aron, *Histoire de l'épuration*, t. 3, vol. II (Fayard, 1975), p. 270.

그렇다고 해서 해방후에 실제 행정숙청이 숙청위원회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최종결정권은 여전히 각 부의 장관에게 있었지만 실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혐의가 있는 공직자들을 심문하고 구체적인 징계를 상부기관(공급적으로는 장관)에 제안한 것은 다양한 심급의 숙청위원회들이었던 것이다. 숙청위원회는 학교 단위나 관공서 단위 혹은 시(市) 단위로 결성되기도 했고 각 도의 '도(道)해방위원회'가 창설한 '도숙청위원회'가 그 도의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숙청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숙청위원회들이 혐의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끝에 작성한 의견서들은 관할 도청이나 공화국지역위원¹⁴⁾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 각 부에 설치된 '중앙숙청위원회'에 의해 수합되었고, 이어서 중앙숙청위가 그 부의 장관에게 징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징계안을 장관이 승인하거나 수정 혹은 기각하는 것이 대체적인 행정숙청 경로였다.¹⁵⁾

1944년 6월 27일 명령에 누락되었던 '숙청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결국 몇 달 뒤에 그 명령의 일부를 수정하는 '1944년 10월 25일 명령'에 포함되었다. 그 명령은 각 부 장관에게 숙청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부여했는데¹⁶⁾ 사실, 이는 새로운 규정이라기보다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한 사후 승인에 가까웠다. 9월 1일 식민부를 필두로 9월 7일 법무부, 9월 27일 내무부, 10월 3일 외무부, 10월 13일 식량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10월 26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에 (중앙)숙청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었던 것이다.¹⁷⁾

요컨대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가 포고한 1944년 6월 27일 명령은 숙청위

14) 비시 정부 시기의 '지역지사'에 해당하는 직위로, 2-8개의 도를 묶는 행정구역 단위인 '지역'(région)의 최고행정책임자다.

15) Marcel Baudot, "La répression de la collaboration et l'épuration politique, administrative et économique", Comité d'histoire de la deuxième guerre mondiale, *La Libération de la France*(Éditions du CNRS, 1976), p. 778;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pp. 31-33.

16) Baruch (dir.), *Une poignée de misérables*, p. 556.

17) *Ibid.*, pp. 553-556; Baruch, "L'épuration du corps préfectoral", *Une poignée de misérables*, p. 143; Étienne Burin des Rozières, "L'administration des Affaires étrangères au lendemain de la libération de Paris", Fondation Charles de Gaulle, *Le rétablissement de la légalité républicaine (1944)*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1996), p. 463. 그밖에 9월 7일 재정부, 9월 9일 국민경제부, 9월 20일 공보부, 9월 23일 공업생산부, 9월 26일 토목공사-교통부, 9월 27일 노동부, 9월 30일 보건부, 10월 2일 농업부, 10월 3일 육군부(민간직원), 10월 11일 체신부에 중앙숙청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원회에 대한 언급이 빠지기는 했지만 해방후 행정숙청의 대상이 되는 범위와 징계의 기준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최종적인 징계 결정권자(장관)까지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질, 부역 공직자에 대한 행정숙청의 기본적인 틀과 준거점을 마련해 주었다. 모든 공직자 숙청이 행정숙청이란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¹⁸⁾ 모든 행정숙청이 6월 27일 명령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III. 규모의 문제

독일강점기의 부역행위로 해방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모두 몇 명일까? 해방 전후의 부역자에 대한 약식처형의 규모라는 문제가 숙청반대론자들의 ‘10만 명’설과 정부측의 ‘1만 명 안팎’ 사이의 극명한 대립 양상을 보였듯이¹⁹⁾ 행정숙청의 규모 역시 반대론자들의 수치와 정부측 발표수치가 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방후 임시정부에 의한 부역자 숙청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시하며 주로 숙청의 ‘과도함’을 부각시켜온 이들은 행정숙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 공기업 직원, 장교 등의 수를 12만 명 선으로 보았다. 이러한 수치는 1949년에 일부 의원들이 행정숙청 관련법의 수정을 목표로 한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²⁰⁾ 1950년대 내내 숙청에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이들에 의해 거듭 주장되었다. 일례로 1951년에 ‘공익사업 복구-수호 연합’(L’Union pour la restauration et la défense du service public)은 국제연합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1944년 7월 이후 숙청관계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장교, 사법관, 공무원, 공익사업기관 직원”의 수를 12만 명이라 적고 있고,²¹⁾ 극우잡지

18) 이를테면 해방 전후에 레지스탕스 대원들에 의한 부역 공직자 암살 혹은 ‘약식처형은 ‘초법적 숙청’으로, 부역자 재판소와 최고재판소에 의한 유죄선고는 ‘사법적 숙청’으로 볼 수 있다.

19) 이에 대해서는 이용우, 「초법적 숙청과 사법적 숙청: 해방후 프랑스의 부역자 처벌」, 『역사학보』 제181집(2004년 3월)을 보라.

20) Claude d’Abzac-Epezy, “Épuration et rénovation de l’armée”, *Une poignée de misérables*, p. 460.

21) L’Union pour la restauration et la défense du service public, *Requête aux Nations Unies sur les violations des Droits de l’Homme par les juridictions et*

로 유명한 『서방의 수호』지(*Défense de l'occident*)는 1957년에 발간된 특별호에서 '12만'이란 수치를 거론하면서 실제 수치는 '15만 명 이상으로 올려 잡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²²⁾

처음으로 '12만 명'이란 수치를 제시한 의원들에 따르면 그 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장교와 하사관으로 42,000명, 본연의 '공무원(fonctionnaire)'은 28,750명, 그리고 프랑스 철도공사 직원이 7,039명, 수도-가스-전기 공급사의 직원이 5,000명이었다.²³⁾ 공익사업 복구-수호 연합에 따르면 이상의 수치들에 시읍면(코뮌) 관청의 직원, 사회복지시설 직원, 파리 지역 대중교통-지하철공사 직원의 수를 합산하면 "12만 희생자라는 수치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이다.²⁴⁾

이에 반해 정부측의 발표 수치는 이들이 제시한 수치의 7~10분의 1에 불과했다. 행정숙청에 대한 정부측의 다소 세부적인 수치는 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되었다. 하나는 1948년 8월 2일에 총리가 한 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16,113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1951년 1월 25일에 '공직 및 행정개혁 담당 국무서기'가 역시 한 의원의 질의에 응한 것으로 '11,343명'이었다.²⁵⁾ 이 두 수치가 서로 다른 이유는 첫 번째 것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공기업과 국영기업의 직원까지 포괄하고 1944년 6월 27일 명령에 의거해서만이 아니라 "행정숙청과 관련하여 취해진 각종 법적 조치들"로서 내려진 징계들까지 포함한 데 반해, 두 번째 것은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오직 1944년 6월 27일 명령의 제4조에 따른" 징계만을 집계했기 때문이다.²⁶⁾

정부의 수치는 11,343명 이든, 16,113명이든 '12만 명'실과는 달리 군인의

les procédures d'exception instituées en France en vue de réaliser l'Épuration judiciaire, administrative et politique (Éditions André Bonne, 1951), p. 16.

22) "L'épuration administrative", *Défense de l'occident*, n° spécial, n° 39 (janvier-février 1957), p. 88.

23) d'Abzac-Epezy, "Épuration et rénovation de l'armée", p. 460.

24) *Requête aux Nations Unies...*, p. 16.

25)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Débats parlementaires, Assemblée nationale, 3 août 1948, p. 5230; 26 janvier 1951, p. 408. '11,343명'이란 수치 자체는 사실, 1950년 11월 28일에 정부가 발표했던 것인데 이러한 수치와 일각에서 제기된 '12만 명' 사이의 차이를 해명하라는 한 의원의 요구에 공직담당 국무서기가 다음해 1월 25일에 징계별로 세부적인 수치들을 발표한 것이다.

26)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26 janvier 1951, p. 408.

수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12만 명에서 숙청된 장교 및 하사관의 수(42,000명)를 빼더라도 '78,000명'은 '16,000명'에 비해 여전히 5배나 큰 수치다. 약식처형의 규모 문제는 10만 명 설과 정부측 발표치(1만 명) 가운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정부 쪽의 판정승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지만, 행정숙청의 규모로 말하자면 어느 쪽도 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우선 12만 명 설은 군인, 공무원, 철도공사 직원, 수도-가스-전기 배급사 직원이라는 4개 범주별 수치 외에 그 어떤 범주의 수치도, 징계별 수치도 밝히고 있지 않으며, 12만 명에서 알려진 4개 범주의 총합(82,789명)을 뺀 수치인 37,211명은 '기타' 범주들의 총합으로 보기에 너무 큰 수치이다.

정부측 발표는 '16,113명'의 경우 무려 27가지('11,343명'의 경우는 13가지)에 달하는 징계별 수치들을 세부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12만 명 설에 비해 공신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집계방식 역시 이후 역사가들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몇 가지 결정적인 오류들을 보이고 있다. 우선, 부역 공직자들은 부역자 재판소와 공민재판부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면직되었는데 이렇듯 행정숙청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법적 숙청의 결과로 공직에서 축출된 이들의 수는 정부의 발표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행정당국들의 직원과 대부분의 비정규직 직원 역시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시기상으로는 "1947년 4월 29일" 이후에 징계된 공무원의 수가 누락되었다.²⁷⁾

1948-51년의 정부측 발표가 부처별 수치는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프랑수아 루케(François Rouquet)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누락은 경찰 부문 전체 혹은 (경찰이 속한) 내무부 전체의 누락이 될 것이다.²⁸⁾ 정부 부처들 가운데서는 내무부가, 단일부

27) Novick, *The Resistance versus Vichy*, p. 90; Rouquet, "L'épuration administrative en France après la Libération",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33 (janvier-mars 1992), p. 107;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p. 114; Henry Rousso, "L'épuration en France, une histoire inachevée", *Vichy. L'événement, la mémoire, l'histoire* (Gallimard, 2001), p. 533. '1947년 4월 29일'이란 날짜는 1951년 1월 25일에 공직담당 국무서기가 '11,343명'이란 수치의 내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그에 따르면 그 수치는 "1947년 4월 29일에 지시된 공식통계작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26 janvier 1951, p. 408.

문으로는 경찰이 가장 숙청의 규모가 컸던 곳이므로 이러한 평가가 타당하다면 이는 심각한 오류(혹은 은폐)가 아닐 수 없다.

행정숙청법의 개정을 추구하거나 행정숙청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역자 숙청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시한 이들이 숙청의 과도함을 강조하고자 그 ‘희생자’의 규모를 크게 부풀렸다면 정부측은 거꾸로, 이러한 논의에 맞서 숙청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규모보다 작게 추산하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숙청의 실제 규모에 대한 새로운 집계는 1951년 정부측의 발표가 있고 나서 무려 40여 년 만인 1992년에 와서야 한 역사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루케의 작업이 그것으로, 그는 주로, 1948년 6월에 정부 각 부처가 공직담당 국무서기에게 보내온 숙청현황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징계받은 공무원의 수를 22,000명 이상으로, 공사(公社) 및 국영기업의 직원까지 포함할 경우 28,000명 이상으로 각각 추산했다. 현재까지는 다른 대부분의 역사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이상의 집계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루케의 추산치 역시 문제가 없지 않다. 우선, 루케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일부 부처의 경우 사법처벌의 결과로 자동 면직된 공무원의 수를 여전히 포함하지 않았고, 군대의 경우 명백히 1944년 6월 27일 명령의 적용을 받음에도 ‘군무원’ (민간 직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도, 즉 어떠한 군인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²⁸⁾ 뿐만 아니라 1949년 5월까지의 현황이 집계된 교육부를 제외하고는 (각 부처가 보고서를 보낸) ‘1948년 6월’ 이후에 내려진 징계 역시 가산되지 않았다.

사실, 루케의 집계결과의 문제점은 그의 집계방식에 있다기보다는 자료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948년 6월에 정부 각 부처가 공직담당 국무서기에게 보낸 보고서들 자체가 부처별로 완성도가 극히 불균등하고 전반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은 데다 더 큰 문제점은 그 이후 오늘날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루케가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주로 의존한) 체신부와 교육부를

28)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p. 116. 루케의 이러한 평가는, 각 부처의 행정숙청 결과를 수합하던 공직담당국장이 “오직 내무부만이 여러 번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내 공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 기록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29) Rouquet, “L'épuration administrative en France après la Libération”, p. 108;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pp. 115-116.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가 숙청 관련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기를 극도로 꺼렸다는 데 있다.

〈표 1〉은 루케가 정부 각 부처와 몇몇 주요 공사(公社)에 대해 숙청의 규모와 비율을 집계한 것에 군대의 숙청 규모를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³⁰⁾ 행정숙청의 틀을 규정한 1944년 6월 27일 명령은 앞서 밝혔듯이 제2조에서 “모든 계급의 군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범주 역시 행정숙청의 규모를 계산하는 데 넣어야 할 것이다. 〈표 1〉에 표시된 육해공군의 수치는 1949년 5월 19일 의회에서 육군담당 국무서기가 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공식적 ‘숙청’으로 축출된 장교와 공식적으로는 ‘간부정리(dégagement des cadres)’이지만 사실상 숙청의 성격을 띠는 조치로 쫓겨난 장교의 수를 합산한 것이다.³¹⁾

이상의 범주들을 모두 합산하면 해방후 프랑스에서 벌어진 행정숙청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만 보자면 약 21,000명 이상, 여기에 주요 공사들의 직원 수를 합치면 약 27,000명 이상, 이에 1945-48년에 군대에서 축출된 장교들의 수를 가산하면 모두 ‘41,957명 이상’이란 수치를 얻을 수 있다.

‘이상(以上)’이란 단서를 계속 붙이는 것은 일부 부처의 경우 사법적 숙청의 결과로 자동 면직된 공직자의 수가 보고자료에 누락되었다는 점, 모든 공기업에서의 징계가 합산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고, 나아가 공식적인 ‘행정숙청’으로서 내려진 징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역자 숙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각종 징계 혹은 불이익(인사이동, 승진의 지연 등)도 이러한 계산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숙청의 전반적인 규모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측면은 부처별 규모 혹은 징계율이라 할 수 있는데 루케의 집계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표 1〉에서 ‘징계율’은 1946년 1월 현재 각 부

30) *Ibid.*, p. 116; d’Abzac-Epezy, “Épuration et rénovation de l’armée”, p. 461. 루케에 따르면 이 표에서 교통-토목공사부는 민간항공사, 상선, 파리 지역 대중교통-지하철 공사를 포함한 것이고, 외무부는 외교관급의 직원만 집계한 것이다.

31) 공식적 ‘숙청’으로 축출된 장교의 수보다 ‘간부정리’로 전역한 장교의 수가 훨씬 많았다. 1945-48년에 육군, 해군, 공군의 ‘숙청된’ 장교 수가 각각 658명, 50명, 28명인 데 비해 ‘간부정리’된 장교 수는 12,679명, 808명, 892명에 달했다. d’Abzac-Epezy, “Épuration et rénovation de l’armée”, p. 461.

〈표 1〉 행정속칭의 규모 (1944-48)

		피징계자 수	징계율(%)	
정부	내무부	9,508	9.9	21,126
	공보부	409	6.6	
	퇴역군인부	359	5.4	
	식민부	337	4.2	
	보건부	64	2.7	
	법무부	331	1.9	
	노동부	260	1.6	
	교육부	3,391	1.52	
	재정경제부	1,442	1.46	
	교통-토목공사부	1,461	1.3	
	체신부	2,591	1.2	
	농업부	144	0.6	
	외무부	83	?	
	공직담당국 상공부 국방부(군무원) 재건-도시계획부	746	?	
공사	철도	4,892	9.8	5,716
	전기-가스	445	?	
	라디오 방송	379	?	
군대	육군	13,337	?	15,115
	해군	858	?	
	공군	920	?	
전체		41,957		

처의 직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그 시기의 공무원 수가 비시 정부 시기와 같을 수 없지만 비시 시기 내내, 그리고 해방기에도 공무원 수 자체의 진폭이 매우 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온전한 비율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울 것이고, 1946년 1월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부처간 서열을 전반적으로 가늠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이다.

이 추산에 따르면 가장 징계율이 높은 부는 9.9%, 즉 10명 가운데 1명꼴로 행정숙청의 대상이 된 내무부인데 독일 점령당국과 비시 정부의 가장 억압적인 정책을 일선에서 직접 수행한 경찰이 바로 내무부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게다가 내무부 피징계자의 대부분이 바로 경찰관이었다). 다음으로 숙청률이 높은 부는 비시 체제의 공식정책인 ‘국가적 대독협력’을 적극 선전하는 업무를 담당한 공보부(6.6%)였고, 다음은 극우단체의 성원이 많기로 유명한 퇴역군인부(5.4%)였다. 식민부의 숙청률이 다소 높았던 것(4.2%)은 특히 북아프리카 식민지들에 비시 체제에 대한 충성과 관리들이 많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³²⁾ ‘국가적 협력’ 정책을 선두에서 수행한 부문도 아니고 극우파 성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부문도 아닌 교통-토목공사부, 체신부, 농업부는 숙청률이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0.6~1.3%). 이 부처들은 또한 다소 기술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 부처들이기도 했다.

숙청률이 가장 높았던 내무부, 공보부, 퇴역군인부는 <표 2>에서 보듯이 중징계율³³⁾이 가장 높은 부문이기도 했다. <표 2>는 루케가 밝힌 수치들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으로, 비록 모든 부처에 대해 징계의 경중(輕重)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부처별 징계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 이들 수치로 충분할 것이다.³⁴⁾ 두 표 모두에서 보듯이 교육부와 체신부는 절대적 수치 면에서는 내무부 다음으로 많은 피징계자를 배출한 부처이지만 징계율로 보나 중징계율로 보나 낮은 축에 속했다. 이는 이 두 부문이 국가적 부역이라기보다는 일상적 부역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場)인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공직자 전체에 대해 징계율과 중징계율은 얼마나 될까? 사실, 현재 까지는 어떠한 시점(時點)의 공직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나아가 (어떠한 시점이든간에) 대체 공직자 전체수가 정확히 얼마였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대략 해방 직후 공무원의 수와 공기업 직원의 수 전체를

32)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p. 115.

33) 피징계자 전체수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이들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여기서 ‘중징계’는 파면, 해임, 직권퇴직, 해고 등 해당 공직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징계를 가리킨다.

34)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p. 116. 루케는 이 부처들 외에 외무부에 대해서도 중징계의 수치(83명 가운데 79명)를 밝히고 있으나 이 부처의 경우 ‘외교관급 직원’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이 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2〉 부처별 증징계율

	면직, 퇴직 해고	여타 징계	증징계율(%)
공보부	337	72	82.4
퇴역군인부	284	75	79.1
내무부	6,627	2,881	69.7
노동부	174	86	66.9
법무부	198	133	59.8
재정경제부	797	645	55.3
농업부	72	72	50
체신부	1,238	1,353	47.8
교육부	1,109	2,282	32.7

100~150만 명으로 보는 게 중론인데,³⁵⁾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자면 군인을 제외한 행정숙청의 비율은 1.8~2.7% 이상으로 볼 수 있다.³⁶⁾

루케의 집 계에서, 해임, 파면, 직권퇴직, 해고 등 증징계를 받은 공직자의 수가 알려진 부문들만을 토대로 행정숙청 전체에 대한 증징계율을 추산하자면 피징계자 18,963명 가운데 11,206명으로 59.1%라는 다소 높은 비율을 얻을 수 있다.³⁷⁾

요컨대 해방후에 프랑스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100명 가운데 2~3명 이상이 독일 강점기의 행위로 이런저런 징계를 받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증징계를 받은 것으로 행정숙청의 전반적인 비율을 추산할 수 있겠다. 또한 행정숙청의 대상이 된 이의 전체수는 군인의 수를 포함한다면, 숙청반대론자들의 ‘12만 명’에 비해 3분의 1을 약간 넘는 ‘42,000명 이상’, 군인의 수치를 뺀다면 정부 발표치(16,113명)에 비해 1만 명 이상 많은 ‘27,000명 이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35) Rousso, “L'épuration en France”, p. 532.

36) $(21,126 + 5,716)/1,500,000 \approx 0.018$
 $(21,126 + 5,716)/1,000,000 \approx 0.027$

37) 이는 〈표 2〉에 표기한 부처들의 수치에 외무부(83명 중 79명), 전기-가스 공사(445명 중 291명)의 수치를 더해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과 비율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공개수준과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다 온전한 집계는 보다 많은 정부 부처들의 문서고가 열리고 공식적인 ‘행정숙청’에 속하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행정숙청에 해당하는 각종 징계 혹은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보다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공직에서 축출되었던 이들 가운데 나중에 얼마나 복직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까지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IV. 숙청자의 숙청: 지사, 관검사, 경찰

1944년 6월 6일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프랑스 본토의 해방 전투가 시작되고 본토의 해방이 점차 이루어지면서 임시정부가 직면한 딜레마들 가운데 하나는 숙청자들 자신을 숙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지난 4년간의 독일 강점기가 양산한 엄청난 수의 대독협력자들을 숙청하기에 앞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사법기구와 경찰조직 자체, 그리고 도청의 고위관리들 자신을 숙청해야 했던 것이다. 새로운 국가 건설의 선결과제인 숙청과업을 하루 빨리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들에 대한 숙청은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야 할 것이었고, 이후 숙청과업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숙청자의 숙청’은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철저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할 필요성과 최대한 철저히 숙청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란 어려운 법이었다. 게다가 이 부문들은 비시 체제의 존재이유들 가운데 하나인 ‘국가적 대독협력’ 정책 중에서도 가장 억압적인 측면(레지스탕스에 대한 탄압, 유대인의 수용소행 이송 등)을 수행한 부문들이었으므로 더더욱 숙청의 정도가 클 것이었는데 너무 철저한 숙청은 숙청자의 인력난으로 이후 숙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었다.

‘숙청자의 숙청’ 작업은 1944년 6월 27일 명령이 공포되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다. 즉,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직후에 임시정부의 내무위원과 공화국지역위원들은 모든 지사들을 일단 정직(停職)시켰던 것이다. 정직된 지사들은 정식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봉급의 절반만 받을 것이었다. 이어서 파리가 해방되고 나서 한 달 뒤인 9월 27일에 내무부 숙청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숙청위원회는 레지스탕스 조직들의 대표 8명과 레지스탕스 활동 전력(前歷)을 가진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되었고, 실제 활동은 다시 경찰 담당 분과위원회와 일반행정 담

당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지사들에 대한 숙청은 바로 이 일반행정 분과위에서 이루어졌다.

일반행정 분과위는 1944년 10월 17일부터 다음해 4월 18일까지 모두 49회의 회의를 가졌고, 경찰관을 제외한 내무부 소속 공무원 1,111 명에 대한 서류를 검토했다. 이어서 내무부장관의 서류 검토작업이 1945년 말까지 이루어졌고 대체로 1946년 여름까지는 지사를 비롯한 도(道)행정 고위관료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완료되었다.³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행된, 지사에 대한 숙청은 상당히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 내무부 숙청위원회의 심의가 있기도 전에 이미 60 명의 지사가 면직되었고 이후에 나머지 지사들 대부분도 파면되거나 해임되어서 결국 해방 당시의 지사 99명 가운데 6명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숙청률은 중앙행정부서에서 동급에 해당하는 직위인 국장 및 부국장(56.5%)에 비해서도, 지사 바로 밑의 직위인 도청 사무국장 및 군수(53.2%)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이었다. 비시 정부 시기 내내 각 도에서 1명의 지사가 계속 자리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분석대상의 범위를 보다 넓혀서 보자면, 1940년 6월 16일부터 1944년 8월 25일까지 지사를 역임한 인사는 모두 275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파면, 해임, 직권퇴직 등으로 쫓겨난 이는 166명(60.4%)에 달했고, 43명(15.6%)은 무급휴직, 반급휴직, 강등 등의 '임시징계'를 받았다.³⁹⁾ 요컨대 비시 정부 하에서 한 번이라도 지사직을 지냈던 인물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이런저런 징계(대부분은 중징계)를 받았던 셈이다. '국가적 대독협력'을 공식정책으로 천명한 비시 정부 하에서 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지역에서 그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가 각 도의 지사직이었으니만큼 이렇듯 높은 숙청률과 중징계율은 그리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살피볼 사법관, 즉 판검사에 대한 숙청은, 해방후 부역자 처벌의 주축을 이루는 형태가 다름아닌 **사법적** 숙청이었으므로 가장 핵심적인 '숙청자 숙청'이라 할 만하다. 그만큼 이들의 숙청은 시급했으므로 일찍이 1943년

38) Baruch, "L'épuration du corps préfectoral", pp.140-141, 143, 145-146, 148, 159-160; Jean-Marc Berlière et Laurent Chabrun, *Les policiers français sous l'occupation* (Perrin, 2001), pp. 357-360.

39) Baruch, "L'épuration du corps préfectoral", p. 161; Novick, *The Resistance versus Vichy*, p. 82.

9월 10일부터 사법관들을 면직, 정직, 강등시킬 수 있는 권한이 '프랑스 국민 해방위원회'에 부여되었고, 지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과 해당 지역의 해방 직후부터 공화국지역위원들과 법무위원은 숙청위 구성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 사법관들을 정직시켰던 것이다. 숙청위 구성도 비교적 빨라, 파리 해방이 이루어지고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은 1944년 9월 7일에 법무부 산하에 '사법관 중앙숙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다.⁴⁰⁾

숙청위원회는 6명의 사법관과 6명의 레지스탕스 출신 인사로 구성되었고 앞서 본 내무부 일반행정분과 숙청위와 비슷한 기간인 1944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약 60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숙청률은 지사들의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공직들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이었다. 이 부문에 대한 유일하게 공식적인 수치는 1945년 6월에 법무부가 공직담당 국무서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밝힌 것인데 그로부터 반세기 뒤에 역사가 알랭 방코(Alain Bancaud)가 재계산한 바에 따르면 숙청위에서 심사대상으로 삼은 사법관의 수는 총 4,000명 가운데 441명이었다(11%). 이들 가운데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277명이었고(6.9%), 그중에서도 파면, 해임, 직권퇴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이는 169명이었다 (4.2%).⁴¹⁾

이러한 수치와 비율만으로도 그리 낮지 않은 것이지만 실제 숙청의 규모는 이보다 더 컸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방코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사법관들에 대한 숙청은 중앙숙청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행정숙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숙청위를 거치지 않은 축출, 공식적으로는 '의원(依願)' 퇴직이지만 실제로는 압력에 따른 퇴직, 단순징계로서의 직권퇴직이지만 사실상 숙청과 연관된 퇴직, 법무부장관의 중용에 따른 사직, 임용취소, 강제된 인사이동 등으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까지 가산하면 공식적, 비공식적 행정숙청으로 판검사직에서 축출된 이는 모두 230명 선으로 (5.7%), 이러한 중징계를 포함해서 각종 징계를 받은 사법관은 400명 선으로, 즉 전 (준) 사법관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올려잡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100명 이상의 사법관이 부역자 재판소와 공민재판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중 33명이 유죄선고를 받는 등 '사법관에 대한 사법적 숙청' 역시 프랑스 사법사상

40) Henry Rousso et Alain Bancaud, "L'épuration des magistrats à la Libération", Rousso, *Vichy. L'événement, la mémoire, l'histoire*, pp. 598-599, 605.

41) *Ibid.*, pp. 607-608; Bancaud, "L'épuration des épurateurs: la magistrature", *Une poignée de mis érables*, pp. 189-190.

전례 없는 규모였던 것으로 논의되는데 이들의 수를 포함시키고, 그밖에 독일 강점기의 행위나 태도를 이유로 승진이 지연되거나 한직 내지 해외식민지로 전근된 판검사들의 수까지 가산한다면 실제의 숙청률은 더 올라갈 것이다.⁴²⁾

다음으로 논의할 경찰은, 역사가 올리비에 비비오르카(Olivier Wiewiorka)의 최근 진단에 따르면 “숙청의 벼락을 맞지 않았다는 게 오늘날까지도 일반적인 통념”⁴³⁾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규모로 보나 비율로 보나 숙청이 가장 크고 깊게 이루어진 부문이었다. 파리 경찰의 경우, 파리가 해방된 1944년 8월 25일이 아니라 ‘해방 봉기’가 시작된 8월 19일부터 이미 사실상의 숙청이 시작되었다. 파리 경찰관들 자신이 큰 역할을 했던 ‘봉기’ 직후부터 9월 중순까지 파리 경찰청장을 비롯한 700여 명의 부역혐의 경관들이 동료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해 말까지 전국에서 약 5,000명의 경관이 정직되었다. 숙청위원회도 파리 경찰청의 경우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이른 8월 30일에 창설되었다. 숙청위는 대부분, 레지스탕스 출신의 파리 경관들로 구성되었고, 1944년 9월 8일부터 다음해 11월 14일까지 모두 157회의 회의를 가졌다.⁴⁴⁾ 앞서 보았듯이 사법관 숙청위나 내무부 일반행정 숙청위가 모두 1945년 4월에 그 활동을 끝낸 것에 비해 이렇듯 경찰 부문의 숙청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부역혐의자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일 강점기에 레지스탕스 활동가, 공산주의자, 유대인, 강제노역 기피자들에 대한 체포, 고문, 추방 등을 직접 수행한 것이 바로 이들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1944년 9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파리 경찰청 숙청위에 출두한 경관은 모두 3,939명으로, 이는 파리 경찰청 직원의 전체수를 21,000~22,000명으로 볼 때 거의 5분의 1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들 가운데 파리 경찰청장의 최종승인을 거쳐 징계를 받은 이는 1,906명이었고(8.7~9.1%), 그중 파면, 해임, 직권 퇴직, 해고 등의 중징계를 받은 이는 999명(4.5~4.8%)이었다. 또한 숙청위는

42) Bancaud, “L'épuration des épurateurs”, pp. 190-192; Rousso et Bancaud, “L'épuration des magistrats à la Libération”, pp. 625-626.

43) Olivier Wiewiorka, “Épuration: la guerre civile n'aura pas lieu”, *Les collections de l'Histoire*, n° 28 (juillet 2005), p. 14.

44) Novick, *The Resistance versus Vichy*, pp. 83-84; Jean-Marc Berlière, “L'épuration de la police parisienne en 1944-1945”,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49 (janvier-mars 1996), p. 64.

400명 이상을 재판에 회부했는데 이들 가운데 196명이 유죄선고를 받았고 그중 20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실제 처형은 7명).⁴⁵⁾

파리 지역 경관들에 대한 숙청이 '파리 경찰청'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나머지 경찰관들, 즉 중앙부처 소속 경관들과 지방 경관들에 대한 숙청은 앞서 보았듯이 내무부 소속 숙청위의 경찰담당 분과위에 의해 행해졌다. 일반행정 분과위가 1944년 10월 17일부터 다음해 4월 18일까지 총 49회 모임을 가졌던 데 비해 같은 날 첫 회의를 가진 경찰 담당 분과위는 1946년 2월 8일에야 활동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그 16개월 동안 총 113회의 모임을 가졌다. 또한 일반행정 분과위가 심사한 공무원이 1,111명에 그친 데 비해 경찰 담당 분과위가 심사한 경관의 수는 그 10배가 넘는 11,922명에 달했다.⁴⁶⁾

이 분과위에서 제안된 징계안이 승인된 것을 포함하여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진 규모를 보자면, 치안본부(Sûreté nationale) 직원 6,003명 가운데 1,136명(18.9%)과, 전국의 '국가지역경찰(Police régionale d'État)' 소속 경관 46,189명(1944년 8월 말 현재) 가운데 2,423명(5.2%)이 징계를 받았고, 1941년에 비시 정부가 시위진압용으로 창설한 '예비기동대(Groupe mobile de réserve)'에서는 약 11,000명의 경관들 가운데 3,150명이 해고되었다. 징계별로 보자면 파면, 해임, 직권퇴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관이 치안본부와 국가지역경찰 모두, 징계 받은 이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55%와 55.8%).⁴⁷⁾

이상에서 살펴본 치안본부, 파리 경찰청, 국가지역경찰, 예비기동대를 총괄하면, 전국의 경찰 공무원 84,000~85,000명 가운데 8,615명이 징계를 받고 그중에 6,126명이 해당 기구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중징계를 받은 셈이었다. 이는 전체수로 보나 숙청률로 보나 (절대적 수치 자체가 작은 지사단을 차치하면) 정부의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숙청의 규모가 가장 컸던 부처인 내무부의 전체 피징계자수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9,508명 가운데 8,615명). 중징계를 역시 71.1%로, 공보부, 퇴역군인부와 더불어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45) Berlière, "L'épuration de la police parisienne", p. 66; Berlière et Chabrun, *Les policiers français sous l'occupation*, p. 330, 332.

46) "Bilan de la C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Berlière et Chabrun, *Les policiers français sous l'occupation*, pp. 360-362.

47) Berlière et Chabrun, *Les policiers français sous l'occupation*, pp. 321-323.

그러던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을까? 현재까지는 이러한 ‘숙청자 숙청’의 전반적 규모와 징계별 분포만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몇몇 자료들을 통해 이들의 징계사유에 대해 대체적인 경향을 추정할 수는 있다. 국립문서고에서 발견된 한 내무부 문건이 그 대표적인 자료인데, 그것은 아마도 내무부 숙청위원회가 비시 정부 시기에 지사를 역임했던 이들을 심사하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으로, 이들 각자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데 적용할 기준과 세부 항목별 점수들을 제시한 ‘계산표’였다. 이 계산표는 모두 15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개는 지사로서의 업무 수행과 직결된 것으로, ‘공화주의 제도에 대한 침해’, 유대인 및 프리메이슨에 대한 정책 수행, 독일의 경제적 요구에 대한 태도, ‘의무노동국’ 정책 수행, 비시 정부의 선전 수행, ‘항독유격대 및 애국자’에 대한 탄압 정책 수행이 그에 속한다. 나머지 9개 항목 가운데 5개는 ‘직위’와 관계된 것으로 ‘임용(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임용되었는가), ‘승진’, ‘주요 직위’(국가수반이나 정부수반의 측근직, 정부 부처의 수뇌부, 지역지사), ‘추천’(언제 누구의 추천으로 지사가 되었는가), ‘비시 정부에 의한 면직 혹은 복직’으로 구성되고, 다른 4개는 ‘반민족단체들과의 관계, 독일인과의 관계, 레지스탕스와의 관계, 훈장을 받았는가 여부’였다. 이들 각 항목에 대해 다시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가, 미온적으로 수행했는가, 수행을 거부 혹은 방해했는가 등에 따라 대체로 -2에서 +1에 이르는 등급이 제시되고, 직위와 관련해서는 임용이(전국에 대한 독일군의 점령이 시작된) 1942년 11월 전에 이루어졌는가, 그 뒤에 이루어졌는가, 승진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가, 언제 어느 직위까지 올라갔는가 등에 따라 역시 다양한 점수의 스펙트럼이 제시되었다.

지사가 비시 정부의 지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계산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징계를 받은 사유가 주로 지사로서의 업무 수행과 직결된 것이거나 지사라는(혹은 그 이상의) 직위에 오르게 된 과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숙청위원회(혹은 숙청위에 그러한 기준들을 제시한 고위당국자들)가 주로 문제삼은 것이 이들의 직무수행 자체라기보다는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즉,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정부의 지시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낮은 점수를, “엄격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느슨”하고 “관대하게” 실행하는 것이 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던

것이다.⁴⁸⁾

‘숙청자의 숙청’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이들의 직무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숙청률이 특히 높았던 부서나 직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사법관들의 경우, 레지스탕스에 대한 재판을 주로 담당했던 ‘특별재판부(section spéciale)’ 소속 법관이 무려 97명이나 숙청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라든가 법무부 중앙부서의 국장들과 사법감독관들 모두가 파면되거나 퇴직당한 것, 전국의 항소법원 법원장과 검사장 48명 가운데 34명이 숙청위에 회부되고 그중 30명이 징계를 받은 것, 그리고 프랑스의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파기원의 사법관 61명 가운데 11명이 숙청위에 회부되고 그중 6명이 면직된 것은 법조계 숙청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부문들이나 높은 직위들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⁴⁹⁾

〈표 3〉 경찰의 직위별 징계율

	직위	징계율(%)	면직률(%)
치안본부	국장, 부국장 감사관	57	37
	경찰서장	28.9	14.7
	수사관	10.5	5.5
국가지역경찰	일반 경관	4.6	2.7

경찰의 경우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직위가 높을수록 징계율과 면직률이 높았던 것이다. 파리 경찰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파리 지역의 경찰서장 거의 모두에 해당하는 190명이 숙청위에 출두하여 그중 98명이 징계를 받았고(대부분이 중징계였다), ‘테러 진압 특별반’의 경우 235명 중 186명이 숙청위에 출두하여 무혐의로 판명된 35명을 제외한 전원이 파면되었다.⁵⁰⁾

48) “Un barème de la commission d’épuration”, *Une poignée de misérables*, pp. 164-169.

49) Rousso et Bancaud, “L’épuration des magistrats à la Libération”, pp.614-615, 622; Aron, *Histoire de l’épuration*, t. 3, vol. II, p. 282.

50) Berlière et Chabrun, *Les policiers français sous l’occupation*, pp. 322-323, 326, 332; Berlière, “L’épuration de la police parisienne”, p. 66, 68.

비록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들은 아직껏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렇듯 숙청이 집중된 부문, 부서, 직위의 분포와 지사 숙청 관련 '계산표' 등의 자료들은 '숙청자의 숙청'이 무엇보다도 이들의 직위 및 업무수행(정확히는 그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V. 일상적 부역에 대한 징계: 센 도의 사례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비시 체제 하에서 '국가적 부역'을 직접 수행하고 그 중에서도 레지스탕스에 대한 탄압 등 가장 억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부문인 동시에 해방 직후에 숙청을 담당할 부문에 대한 것이라면 이 장에서는 국가적 부역의 주된 집행자들도 아니었고 숙청의 주체도 아니었던, 일반행정 부문의 일반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볼 것이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주된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독일 강점기에 일상적 부역이 가장 크고 활발하게 벌어졌을 지역인 수도권 지역, 즉 '점령지역'의 수도인 파리 시를 행정적으로 포함하는 센(Seine) 도 지역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 지역의 행정숙청을 가장 잘 보여주는 『파리 시청 공식회보』를 분석했다.

이 회보는 센 도청이 관할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익기관 직원, 그리고 센 도에 위치한 모든 공기업의 직원에 대한 '행정숙청' 조치들을 그때그때 발표했다. 필자가 1944년 9월 11일자부터 1948년 4월 8일자까지의 회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 기간에 모두 1,343명의 센 도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이 독일 강점기의 행위나 태도로 징계를 받았다.⁵¹⁾ 이들 가운데 센 도 도청과 파리 시 구청들, 교외 코뮌 시청(혹은 읍면사무소)들, 센 도 공익기관들의 직원들이 779명, 지하철공사, 파리 가스사, 파리 배전(配電)사, 수도공사 등 공기업의 직원들이 539명, 경찰관이 25명이었다.⁵²⁾

51) *Bulletin municipal officiel de la Ville de Paris [et Annexe au recueil des actes administratifs de la Préfecture de la Seine et de la Préfecture de Police]* (이하 BMO로 약칭), 11 septembre 1944-8 avril 1948.

52) 공익기관들 중에서는 병원, 양로원, 고아원 등 '공공부조' 기관의 직원이 225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들 중에서는 파리 지하철 공사의 직원이 무려 319 명으로, 공기업 전체의 59.2%에 달했다. 그밖에 파리 가스사가 89명, 파리 배전사가 54명, 4개 조명사가 54명, 수도공사가 11명, 도시폐물공업처리사가 6명, 전기연합사가 4명, 청소회사가 2명이었다.

센 도 도청에서의 숙청은 앞 장에서 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해방 직후에, 숙청위원회가 설치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파리가 해방된 바로 다음날인 1944년 8월 26일에 센 도청의 고위관리 12명이, 방금 임시정부 수반 드골에 의해 임명된 신임 지사에 의해 정직되었던 것이다. 또한 같은 날 ‘파리 해방위원회’는 이들 12명 가운데 9명과 방금 경질된 센 지사 및 도청 사무국장에게 대해 체포 지시를 내렸다.⁵³⁾

사흘 뒤에는 “독일 점령기의 행위를 이유로 센 도청 및 부속 관공서들의 공무원들에 대해 제기된 불평사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센 도청에 숙청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파리 해방위원회의 사무국원이 그 숙청위의 위원장이 되었고, 숙청위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공익사업-보건 노조들이, 3명은 파리 시청 해방위가 각각 임명했다. 이 숙청위는 센 도청과 파리 시의 각 구청 및 파리에 위치한 공익기관들의 직원에 대해서만 다루었고, 교외 코뮌 시청(혹은 읍면사무소)들과 그 지역 공익기관들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센 도청 관할이기는 했지만 따로 각 코뮌별로 숙청위가 설치되었다. 이들 코뮌 단위의 숙청위는, 코뮌 해방위가 지명한 위원장과, 노조들이 지명한 2명의 직원 대표, 그리고 ‘시청 직원 해방위’가 지명한 1명의 대표로 구성되었다.⁵⁴⁾

이어서 9월 19일에는 파리에 위치한 공기업들인 수도공사, 파리 배전사, 파리 가스사, 파리 지하철 공사에 잇달아 숙청위들이 설치되었고, 석달 뒤에는 도시폐물공업처리사에서조차 숙청위가 구성되었다. 이들 모두 코뮌 숙청위와 비슷하게 파리 해방위가 임명한 위원장과 관계 노조들이 지명한 2명의 위원, 해당 회사 직원 해방위가 지명한 1명의 위원으로 숙청위가 구성되었다.⁵⁵⁾

이들 숙청위는 앞 장들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숙청에 대한 결정권은 없었다.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와 부역혐의직원에 대한 심문 그리고 비공개회의 끝에 도청 숙청위는 지사에게, 코뮌 숙청위는 코뮌 시(읍면)장이나 해당 공익기관 기관장에게, 공기업 숙청위는 그 회사 사장 겸 이사장에게 직원별로 구체적인 징계안을 제안했고, 그러한 제안은 때때로 시장, 기관장, 이사장 등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센 지사에 의해 수용되거나 수정되었다. 그리하여 각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지사령’으로 내려졌고 곧바로 시청회보에 발표되었다.

한편, 이 숙청위들은 앞 장에서 본 부문들의 숙청위보다 훨씬 늦게까지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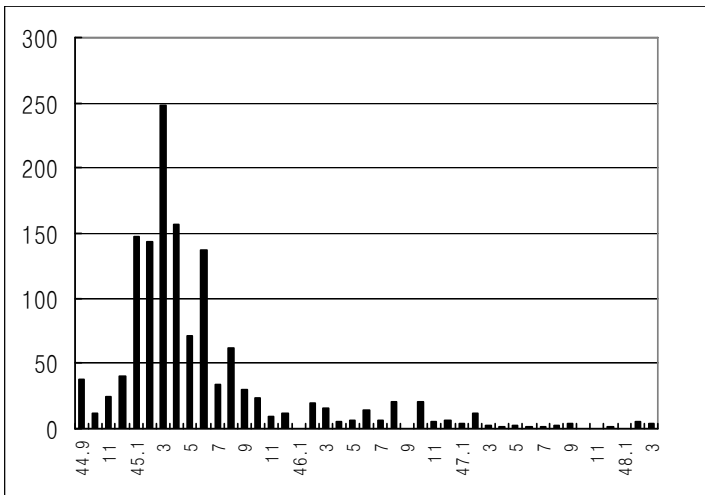
53) BMO, 28-29 août 1944.

54) BMO, 30 août 1944; 8 septembre 1944; 16-17 septembre 1944.

55) BMO, 20 septembre 1944; 20 décembre 1944.

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내무부의 일반행정분과 숙청위와 법무부의 사법관 중앙숙청위가 1945년 4월에 활동을 종료했고 파리 경찰청 숙청위가 1945년 11월까지, 내무부의 경찰분과 숙청위가 1946년 2월까지 활동했던 데 비해 센 도청 숙청위와 지하철 숙청위는 1946년 12월까지, 파리 배전사 숙청위는 1947년 4월까지도 회의를 가졌던 것이다⁵⁶⁾

이렇듯 숙청위의 활동기간이 길어진 것은 징계를 받아야 할 직원의 수가 많아서라기보다는(숙청의 규모로 보자면 경찰 쪽이 훨씬 더 컸다) 앞 장에서 본 ‘숙청자의 숙청’에 비해 급속히 숙청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덜했고, ‘국가적 부역’의 핵심부문들에 비해 사안을 심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던 데 연유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도표 1〉 센 도 행정숙청의 시기별 분포

56) BMO, 7 février 1947; 9 mai 1947; 27 août 1947. 센 도청 숙청위의 1946년 12월 12일 회의는 다음해 2월 1일, 지하철 숙청위의 1946년 12월 5일 회의는 다음해 5월 7일, 파리 배전사 숙청위의 1947년 4월 21일 회의는 8월 11일에 가서야 각각 실제 징계조치로 연결되었다. 이 회의 날짜들은 필자가 시청회보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발견한 날짜 가운데 가장 뒤의 것으로, 실제 마지막 숙청위 회의는 그 이후일 수도 있다.

〈표 4〉 센 도행정숙청의 징계별 분포

징계명	피징계자 수
파면	339
해임	68
면직 ⁵⁷⁾	88
직권퇴직	102
해고	273
정직	29
휴직	259
강등	30
인사이동	72
견책	35
연금 지급중지	40
기타	8

숙청위의 활동기간 자체는 길었지만 실제 징계조치가 내려진 빈도수를 시기별로 분석해보면 〈도표 1〉에서 보듯이 대체로 초기에 숙청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4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숙청이 이루어졌다(전체 징계건수의 67.2%에 달했다). 해방 직후보다 이 시기에 징계가 더 많이 내려진 것은 숙청위가 자리잡는 데, 그리고 관련서류와 증언을 모으고 검토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고, 1945년 3월에 징계건수가 급증해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248건)은 정부가 “늦어도 3월 15일까지는 행정숙청에 관한 모든 결정을 취할 것”⁵⁸⁾을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45년 5월에 잠시 줄어들었다가 6월에 다시 징계의 규모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독일 수용소들에 억류되었던 프랑스인들이 5월에 대거 귀국하고 그에 따라 부역자들에 대한 새로운 신고와 증언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57) 연금이 수반된 것(해임)인지 수반되지 않은 것(파면)인지 명시되지 않은 면직을 ‘면직’으로 분류했다.

58) BMO, 1 février 1945. 이 시한은 결국 다른 모든 부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 센 도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각기 어떠한 징계를 받았을까? <표 4>는 1944년 9월부터 1948년 3월까지 행정숙청의 대상이 된 센 도청 관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1,343명의 징계별 수치를 집계한 것이다. 이 표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사실은, 가장 빈번하게 내려진 징계가 다름아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즉 무(無)연금면직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전체 징계의 4분의 1(25.2%)로, 체신부(17.7%)나 교육부(12.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었다.⁵⁹⁾ 또한 ‘파면’만이 아니라 해임, 면직, 직권퇴직, 해고까지 모두 합산한 ‘중징계’의 수치는 총 870명으로 전체 징계의 64.8%에 달했는데 이는 전국 행정숙청의 평균 중징계율(59.1%)을 웃도는 것이었다. 이러한 높은 중징계율은 부처별로는 공보부(82.4%)와 퇴역군인부(79.1%), 그리고 센 도청 자체를 포함하는 내무부(69.7%)에만 못 미치는 것으로, 이는 파리 지역이 점령 지역의 수도라는 위상에 걸맞게 부역이 가장 활발하고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프랑스 공화국의 수도로서 부역자 숙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징계율이 특히 높았던 것은 공기업 직원보다는 공무원이었다. 지하철사, 가스-전기사 등 파리 지역 공기업의 직원들의 경우 539명 가운데 320명(59.4%)이 중징계를 받은 데 비해 센 도청, 파리시 구청들, 교외 코뮌 시청(혹은 읍면사무소)들, 공공부조기관을 제외한 공익기관들의 직원들은 총 554명 가운데 무려 4분의 3에 해당하는 416명(75.1%)이 중징계를 받았던 것이다.

시기별로 보자면 <도표 1>에서 보았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징계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징계율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1944년에 56.6%였던 중징계율이 1945년에 67%까지 치솟았다가 1946년에 57.5%, 1947-48년에 51.3%로 계속 떨어졌던 것이다. 특히 징계의 규모가 가장 컸던 1945년 1/4분기(538건)는 중징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75.8%)이기도 했다. 이렇듯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숙청의 빈도(양)와 징계수위(질) 둘 다가 하락하는 경향은 해방 직후에 고조되었던, 철저한 숙청에 대한 여론의 열기가 식어감에 따른 것으로, ‘행정숙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숙청이라 할 사법적 숙청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부문의 숙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59) 체신부와 교육부의 징계별 분포는 루케의 연구서에서 볼 수 있다.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p. 57, p. 59.

〈표 5〉 센 도 행정숙청의 사유별 분포

징계사유	피징계자 수	비율(%)
발언 및 태도	395	29.4
조직 가입	347	25.8
부역노동 자원	300	22.3
친교	113	8.4
밀고	87	6.5
선전	72	5.4
체포	32	2.4
직무수행	24	1.8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을까? 앞서 살펴본 지사, 판검사, 경찰관의 경우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었던 반면, 센 도청 관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파리 시청 회보 덕분에 징계받은 이들 각각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징계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앞 장에서 본 부문들과 달리 ‘직무수행’과 관련된 징계의 비율이 극히 낮았다는 것이다(〈표 5〉).⁶⁰⁾ 친독일적인 발언을 하고, 대독협력 조직에 가입하고, 독일로 일하러 가기를 자원하고, 동료직원들을 밀고하고, 독일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 어느 것도 도청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⁶¹⁾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직접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의사(意思)’와 관련된 것이었다. 각

60) 이 표에서 모든 비율의 총계가 100%를 넘는 것은 일부 피징계자의 경우 징계사유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61) 멘에루아르(Maine-et-Loire) 도의 숙청을 분석한 베르제르(Bergère)도 이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그 도에서 경찰관, 헌병, 사법관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이 행정숙청위들에 회부된 주된 사유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는 26.6%였고, 나머지 73.4%가 각종 ‘직업외적’ 사유였던 것이다. Marc Bergère, *Une société en épuration: Épuration vécue et perçue en Maine-et-Loire. De la Libération au début des années 50*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4), p. 225.

중 반민족적 태도와 발언이 그것으로, 모두 395명에게서 발견되었다(전체 피징계자의 29.4%). 이는 다시 “독일에 우호적인 발언”, “친독일적 태도” 등으로 표기된 ‘친독일적 의사’와 “비시 정부에 우호적인 발언”, “비시 정책에 찬동하는 태도” 등의 ‘친비시적 의사’, “연합국들에 호의적이 아닌 태도” 등의 ‘반연합국적 의사’, 그리고 ‘반민족적, 반프랑스적 의사’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 가운데 친독일적 의사가 165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은 친비시적 의사(119명), 반연합국적 의사(92명) 순으로 많았다.

이렇듯 각종 ‘의사’ 표명이 가장 높은 비율의 징계사유가 되었던 것은 센 도 공직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일상적 부역’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부문이라 할 체신부와 교육부의 행정숙청에서도 각각 35%와 27.5%로 ‘의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다. 또한 멘에루아르(Maine-et-Loire) 도의 행정숙청(경찰, 헌병, 사법관 제외)에서도 친독 감정, 비시주의 등의 ‘의사범’이 25.3%로 징계사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⁶²⁾

센 도 행정숙청에서 의사범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징계사유는 각종 대독협력 조직이나 비시파 조직에 가입한 것이었다(25.8%). 모두 347명이 그러한 조직들에 가입한 대가로 징계를 받았다. 사실, 이러한 조직들에 가입하는 행위는 행정숙청에서만 아니라 사법적 숙청에서도 명백히 ‘범죄’로 규정되었다. 해방 직후에, 기존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역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국치죄’를 도입한 1944년 8월 26일 명령은 민병대, ‘협력 그룹’, 인민민족연합(RNP) 등의 “협력기구”들에 가입하거나 “1942년 1월 1일 이후에 프랑스 인민당(PPF), 프랑스주의당, 사회혁명운동당(MSR)에 가입했거나 탈퇴하지 않은” 행위도 국치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던 것이다.⁶³⁾

이들 조직 가운데 센 도 행정숙청의 징계사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조직은 <표 6>⁶⁴⁾에서 보듯이 프랑스 인민당(Parti populaire français, PPF)이었다. PPF는 공산당에서 쫓겨난 자크 도리오(Jacques Doriot)가 1936년에 창설한 정당으로, 강점기 파리의 대표적인 협력주의 정당으로 손꼽히는데 이렇듯 ‘조직 가입’으로 인한 피징계자 수의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347명 중에

62)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 p. 245; Bergère, *Une société en épuration*, p. 225.

63)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Défense de l'occident*, n° 39 (janvier-février 1957), pp. 28-29.

64) 일부 피징계자는 2개 이상의 조직에 가입했다.

〈표 6〉 셴 도 피징계자의 가입조직별 분포

조직명	피징계자 수
PPF	158
RNP	86
민병대	31
LVF	20
원수선전단	15
프랑스주의당	14
MSR	12
협력 그룹	5
기타	21

158명) 이 정당 당원이 많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도리오의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파리 북부교외 코뮌 생드니의 공무원이 대거(111명) 가입한 데 따른 것이었다.⁶⁵⁾

전국 당원수 면에서 PPF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협력주의 정당인 인민민족연합(Rassemblement national populaire, RNP)이 셴 도의 조직 관련 징계 사유 면에서도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24.8%). 다음으로는 PPF 나 RNP처럼 협력주의 정당이 아니라 비시 정부가 레지스탕스 탄압을 위해 직접 창설한 준군사조직인 ‘민병대(Milice)’가 큰 수를 차지했고(31명), 독일군과 함께 소련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창설된 ‘반(反)볼셰비키 프랑스 의용대(Légion des volontaires français contre le bolchevisme, LVF)’가 20명, 그리고 나머지 군소 대독협력 단체나 비시파 조직들이 각각 15명 이하의 수치를 나타냈다.

‘의사범’과 ‘조직 가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징계사유는 ‘독일을 위한 노동을 자원’한 것이었다. 무려 300명(22.3%)이 그러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⁶⁶⁾ 독일로 일을 하러 가는 행위는 친독 발언이나 협력정당 가입처럼

65) Henry Rousso, *La collaboration* (M. A. Éditions, 1987), p. 89, 137; Bertram M. Gordon (ed.), *Historical Dictionary of World War II France* (Westport: Greenwood Press, 1998), pp. 276-277.

66) 대부분 독일로 일하러 간 것이었지만 국내에 남아서 자진해서 독일 당국을 위해 일한 것(43명)도 이 범주에 해당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사 표현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것이 의무노동제(Service du travail obligatoire, STO)에 따른 강제징발이 아닌 한, 명백히 '경제적 부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징계사유가 체신부나 교육부의 경우 6-7%를 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⁶⁷⁾ 센 도 행정숙청의 경우가 유별나게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부문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무원만이 아니라 공기업 직원들도 포함한 데 따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기업 직원이 151명에 달했다. 또한 체신부에서도 주로 노동자와 하급사무원이 이러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데⁶⁸⁾ 센 도청에서도 청소과의 도로보수 인부와 수도정화과의 하수도 청소부, 파리 교외 코뮌 당국 소속 공장들의 노동자 등 육체노동자들이 상당수 이러한 사유로 행정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징계사유는 숙청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친교 관계'였다. 113명(8.4%)이 그러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대부분은 독일인과의 교분(97명)이 문제가 되었고 일부는 대독협력자와의 관계(18명)로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범주의 피징계자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었고(113명 가운데 82명, 이들 대부분이 독일 군인과의 친교 관계였다. 간혹 '동거', '정부(情婦)', '육체적 관계' 같은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친교' 관계라고만 표기된 것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 없었다. 특정 병사와의 친밀한 관계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군 부상병들에게 지나친 호의를 보인" 간호사⁶⁹⁾, "점령군 병사의 화물을 집안에 맡아준" 공무원⁷⁰⁾,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정기적으로 친정 쪽 [독일인] 친구의 방문을 받는 것을 용인한" 지하철 기관사⁷¹⁾까지도 행정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부역이자 가장 '악질적'인 종류의 부역행위(따라서 부역의 '상장')로 알려진 밀고와 선전활동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모두 87명(6.5%)이 밀고행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양상은 실로 다양했다. 즉, 레지스탕스 활동가를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애국자'(회보

67) 체신부에서는 5.6%, 교육부에서는 6.7%였다.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p. 86.

68)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p. 86.

69) BMO, 15 octobre 1944.

70) BMO, 20 avril 1945.

71) BMO, 14 juin 1945.

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 드골주의적 견해를 피력한 동료직원, 공산주의자, 부역노동기피자, 영국 라디오 방송 청취자, 친독벽보를 훼손한 승객 등을 직장 상관이나 점령당국이나 민병대에 밀고하고, 항독전단이나 지하신문, 폭발물 등을 발견, 신고하는 행위도 이러한 범주에 속했다.

‘선전’이라는 징계사유는 단지 자신의 견해를 개인적으로 피력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의사범’과 구분되는 것으로, 총 72명(5.4%)에게서 발견되었다. 단순히 “친독일 선전”이라고만 표기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밖에 친독전단을 배포하고, 친독신문에 기고하고, 비시 정부의 대독협력 정책(특히 부역노동 정책)을 적극 선전하고, 나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의 행위가 적시되기도 했다.

‘밀고’의 수준을 넘어서 ‘체포’하기까지 한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는 32명(2.4%)에게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애국가, 협력거부자, 친독벽보나 폐탕 원수의 사진을 훼손한 승객, 지하전단 배포자, 유대인 등에 대한 체포를 유발’하거나, 지시하거나, 돕거나, 직접 수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센 도의 행정숙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징계사유는 앞서도 밝혔듯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모두 24명(1.8%)이 그러한 범주에 해당했는데 앞 장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직무수행 자체보다는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었다. 즉, 점령당국이나 비시 정부 혹은 상관의 지시를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실행하거나 “너무 엄격히”, “문자 그대로” 집행하거나 “너무 순종적으로”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대부분이 이렇듯 상부의 지시나 규정을 따르는 경우였지만 일부의 경우 지시를 내리는 쪽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례로 센 도청의 한 국장은 ‘협력거부자 명단을 파리 경찰청과 치안본부에 전달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수많은 프랑스인의 체포를 야기’한 것이 징계사유였고,⁷²⁾ 파리 14구 구청의 사무국장은 “배급증 교부에 관한 일부 공문들을 직접 지시로 개악함으로써 레지스탕스 활동을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⁷³⁾

그러면 이상에서 살펴본 징계사유들이 징계수위 면에서는 각기 어떠한 분포를 보였을까? <표 7>에서 보듯이 가장 처벌이 무거웠던 징계사유는 밀고도, 체포도, 협력조직 가입도 아니라 ‘부역노동 자원’이었다. 레지스탕스 동료

72) BMO, 7 mars 1945.

73) BMO, 17 février 1945.

〈표 7〉 센 도 행정숙청의 사유별 징계수위

	중징계					휴직	정직	연금 지급 중지	강등	인사 이동	견책	기타	중징 계율 (%)
	파면	해임	면직	직권 퇴직	해고								
부역 노동 자원	117	14	3	21	93	38		6	4		4		82.7
선전	35	10	1	6	7	10		1	1		1		81.9
조직 가입	105	10	71	9	81	38	12	13	2	2	3	1	79.5
체포	17	2		2	3	5		3					75
밀고	29	10	3	7	14	12	2	5	1	2	2		72.4
친교	24	6	4	7	37	21			4	7	2	1	69
직무 수행	3	1		7	3	5		1		4			58.3
발언 및 태도	48	18	10	39	48	121	13	2	22	53	19	2	41.3

직원을 밀고하거나 친나치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보다 독일에 일하러 가는 행위가 더 무거운 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다소 놀라운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범주의 징계사유가 중징계율이 높았던 것(82.7%)은 그 행위의 죄질이 무거워서라기보다는 (독일에 가느라) 이미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난 마당에 해고나 파면 조치를 내리기가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범주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근무연한이 짧은 직원이 주로 받은 ‘해고’ 처분이 특히 많았고 ‘보조원’, ‘조수’, ‘임시직’ 등으로 표기된 직원들이 특히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는 행정숙청의 강도가 죄질에만 비례한 것이 아니라 피징계자가 해방후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업무능력’이나 ‘숙련도’를 갖췄는가, 혹은 ‘호환하기 쉬운 인력인가’에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징계율이 높았던 징계사유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부역이라 할 ‘선전’(81.9%)과, 법적으로 ‘국치죄’에도 포함된 ‘대독협력 조직 가입’(79.5%)이었다. 특히 국치죄를 도입한 1944년 8월 26일 명령은 그러한 죄목

으로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공직에서 면직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 가입’의 중징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센 도 행정숙청의 징계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발언 및 태도’는 징계수위 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중징계율 41.3%). 또한 다른 징계사유들 대부분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조치를 가장 빈번하게 받았던 반면, ‘발언 및 태도’만큼은 중징계에 속하지 않은 ‘휴직’ 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다(121명). 이는 친독일적, 친비시적 발언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행위이고 따라서 숙청위에 가장 많이 접수되었던 사안이지만 실제 대독협력에 대한 기여도는 여타의 행위들에 비해 훨씬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I. 맺음말

해방 직후에 고조되었던, 숙청에 대한 열기가 식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철저한 숙청보다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화합을 더욱 중요시하는 쪽으로 사회-정치적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1950년대 들어 사면법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행정숙청도 예외가 아니어서, 1951년 1월 5일의 사면법과 1953년 8월 6일 사면법은 피징계자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특히 1953년 8월의 사면법은 1944년 6월 27일 명령에 따른 것이든, ‘사실상의 행정숙청 조치’에 따른 것이든, ‘사면되지 않은 형사처벌이 수반되지 않은’ 모든 징계를 사면해주었다.⁷⁴⁾ 또한 ‘최고행정재판소’(1952년까지는 유일한 행정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했던 국사원(Conseil d'État)에는 일찍이 1945년부터 피징계자들의 행정소송이 잇달아 접수되었고 상당수의 징계가 국사원의 결정으로 취소되었다.⁷⁵⁾

그러나 이러한 사면법에 의한 행정숙청의 ‘총사면’도, 국사원의 징계취소조치들도 곧 ‘복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파리 경찰청의 경우 1959년까지 국사원과 행정재판소에 의해 67건의 면직처분이 취소되었는데

74) 이 두 사면법은 *Défense de l'occident*, n° 39 (janvier-février 1957), pp. 144-151에 전문(全文)이 수록되어 있다.

75) 이에 대해서는 Bancaud et Baruch, “Vers la déséparation ? L'épuration devant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1945-1970”, *Une poignée de mis érables*, pp. 480-512를 보라.

경찰노조 및 레지스탕스 단체들의 반발로 실제 복직은 무산되었고, 교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피징계자는 공민권 박탈 기간이 끝난 뒤이거나 사면법에 의해 사면받은 뒤라도 법적으로 복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 하급직원 대부분은 복직되었지만 고위공무원과 상당수의 중급공무원은 '국가원과 행정재판소들의 징계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복직되지 않았고, 사법관들은 복직되더라도 아주 늦게서야 복직되거나 주변적인 자리들로 재임용되었다.⁷⁶⁾

따라서 해방후 프랑스 행정숙청의 규모를 온전히 평가하려면 술한 징계취소조치들과 사면조치 역시 감안해야 하지만 이렇듯 복직의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인 실태까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41,957명(군인 포함)이라는 피징계자 수치와 1.8-2.7%(군인 제외)라는 징계율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보여주지만 보다 온전한 추산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행정숙청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강점기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징계로 봐야 할 다양한 조치들, 즉 압력에 따른 사직, 승진의 지연, '부서의 이익을 위한' 인사이동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인원감축에 이르는 조치들까지도 가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체적인 숙청과정을 보려면 각 부문별 숙청을 검토해야 하는데 본고에서 필자가 선택한 직업집단은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도지사, 판검사, 경찰관, 도청·구청·코뮌 당국(시청, 읍면사무소)의 직원, 병원·고아원·공동묘지 등의 공익시설 근무자, 그리고 공기업 직원이었다. 이 가운데 도지사, 판검사, 경찰관은 비시 시기에 '국가적 부역'을 직접 수행하고 특히 억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부문에 속하고, 나머지 범주들은 '일상적 부역'이 이루어지는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비는 행정숙청의 양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선, 행정숙청이 지속된 기간이 달랐다. 즉, 부문별 숙청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면, 지사와 판검사는 1944년 10월부터 1945년 4월까지 경찰은 이보다 약간 길어서 파리 경찰청은 1945년 11월, 파리를 제외한 전국 경찰은 1946년 2월까지 숙청위 회의가 열렸던 데 비해 센 도청이나 그 지역 공사(公

76) Berlière et Chabrun, *Les policiers français sous l'occupation*, pp. 341-342; André Basdevant, "L'épuration administrative", *La Libération de la France* (Éditions du CNRS, 1976), p. 795; "L'épuration administrative", *Défense de l'occident*, n° 39 (janvier-février 1957), pp. 92-93; Roussio et Bancaud, "L'épuration des magistrats à la Libération", p. 628.

社)의 숙청위들은 1947년 봄까지도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는 지사, 판검사, 경찰관의 부역행위가 직무상 여타의 공직이나 공기업에 비해 훨씬 심해서(혹은 자명해서) 심사가 오래 걸리지 않았던 동시에 ‘숙청자의 숙청’이란 점에서 다른 부문들의 숙청에 비해 훨씬 시급했던 반면 일반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부역행위 여부 심사가 보다 어려웠고 ‘숙청자의 숙청’ 만큼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부문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측면은 무엇보다도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다. 지사, 판검사, 경찰관의 경우 비록 개개인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간접적인 증거로 미루어보아 대체로 업무수행이나 직위와 직접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센 도 행정숙청의 경우 대부분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것이다. 센 도청과 시읍면사무소 직원들, 파리 지역의 공기업 직원들은 대부분,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지 밖에서 벌였던 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근무중에 보였던 태도나 행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자신의 직무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요컨대 대부분의 센 도 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공무 수행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징계에서도 어느 부문이든 업무수행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 그 방식, 즉 상부의 지시나 규정을 시행하는 방식(혹은 지시를 내리는 방식)을 문제삼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비시 정부 성립과정의 ‘합법성’—숙청당국은 공식적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이라는 과거 사실과 현재의 절박한 당면과제들, 즉 국가재건과 질서유지, 그리고 숙청과업 수행에 대한 필요성에 비추어 비시 공직자 전원을 숙청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주제어 : 숙청(Purge), 행정숙청(Administrative Purge), 협력(Collaboration), 비시(Vichy), 센 도청(Prefectorial office of the Seine)

〈참고문헌〉

1. 1차 사료

- “Un barème de la commission d'épuration”, Marc Olivier Baruch (dir.), *Une poignée de misérables* (Fayard, 2003).
- “Bilan de la C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Jean-Marc Berlière et Laurent Chabrun, *Les policiers français sous l'occupation* (Perrin, 2001).
- Bulletin municipal officiel de la Ville de Paris et Annexe au Recueil des Actes administratifs de la Préfecture de la Seine et de la Préfecture de Police*, 28-29 août 1944-1948 avril 1948.
- “L'épuration du préfet Z., Avis de la commission d'épuration en date du 2 mars 1945”, Marc Olivier Baruch (dir.), *Une poignée de misérables* (Fayard, 2003).
- De Gaulle, Charles, *Mémoires de guerre*, t. II, *L'unité 1942-1944* (Librairie Plon, 1956).
-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Débats parlementaires, Assemblée nationale, 3 août 1948; 26 janvier 1951.
- “Loi du 5 janvier 1951 portant amnistie”, *Défense de l'occident*, n° 39 (janvier-février 1957).
- “Loi du 6 août 1953 portant amnistie”, *Défense de l'occident*, n° 39 (janvier-février 1957).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Marc Olivier Baruch (dir.), *Une poignée de misérables* (Fayard, 2003).
- “Ordonnance du 27 juin 1944 relative à l'épuration administrative sur le territoire de la France métropolitaine”, François Rouquet,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CNRS Éditions, 1993).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Défense de l'occident*, n° 39 (janvier-février 1957).
- L'Union pour la restauration et la défense du service public, *Requête aux Nations Unies sur les violations des Droits de l'Homme par les juridictions et les procédures d'exception instituées en*

France en vue de réaliser l'Épuration judiciaire, administrative et politique (Éditions André Bonne, 1951).

2. 연구서와 논문

Aron, Robert, *Histoire de l'épuration*, t. 3, vol. II (Fayard, 1975).

Bancaud, Alain, "L'épuration des épurateurs: la magistrature", *Une poignée de misérables* (Fayard, 2003).

_____ et Marcel Baruch, "Vers la désépuration ? L'épuration devant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1945-1970", *Une poignée de misérables* (Fayard, 2003).

Baruch, Marc Olivier (dir.), *Une poignée de misérables. L'épuration de la société française après la Seconde Guerre mondiale* (Fayard, 2003).

_____, "L'épuration du corps préfectoral", *Une poignée de misérables* (Fayard, 2003).

Basdevant, André, "L'épuration administrative", Comité d'histoire de la deuxième guerre mondiale, *La Libération de la France* (Éditions du CNRS, 1976).

Baudot, Marcel, "La répression de la collaboration et l'épuration politique, administrative et économique", *La Libération de la France* (Éditions du CNRS, 1976).

_____, "La Résistance française face aux problèmes de répression et d'épuration", *Revue d'histoire de la Deuxième Guerre mondiale*, n° 81 (janvier 1971).

Bergère, Marc, *Une société en épuration: Épuration vécue et perçue en Maine-et-Loire. De la Libération au début des années 50*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4).

Berlière, Jean-Marc, "L'épuration de la police parisienne en 1944-1945",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49 (janvier-mars 1996).

_____ et Laurent Chabrun, *Les policiers français sous l'occupation* (Perrin, 2001).

Buton, Philippe, *La Joie douloureuse. La Libération de la France*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2004).

Chevallier, Jacques, "L'épuration au Conseil d'État", Fondation Charles

- de Gaulle, *Le rétablissement de la légalité républicaine (1944)*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1996).
- Cointet, Michèle, “L'épuration administrative”, Christiane Franck (dir.), *La France de 1945, Résistances, Retours, Renaissances* (Caen: Presses universitaires de Caen, 1996).
- d'Abzac-Epezy, Claude, “Épuration et rénovation de l'armée”, *Une poignée de misérables* (Fayard, 2003).
- des Rozières, Étienne Burin, “L'administration des Affaires étrangères au lendemain de la libération de Paris”, *Le rétablissement de la légalité républicaine (1944)*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1996).
- “L'épuration administrative”, *Défense de l'occident*, n° spécial, n° 39 (janvier-février 1957).
- Goyard, Claude, “Introduction: la notion d'épuration administrative”, Paul Gerbod, Claude Goyard et al., *Les épurations administratives XIX^e et XX^e siècles* (Genève: Librairie Droz, 1977).
- Lottman, Herbert R., *The Purge: The Purification of French Collaborators after World War II*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86).
- Novick, Peter, *The Resistance versus Vichy. The Purge of Collaborators in Liberated Fr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 Rouquet, François, “L'épuration administrative en France après la Libération”,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33 (janvier-mars 1992).
- _____, *L'épuration dans l'administration française* (CNRS Éditions, 1993).
- Rousso, Henry, *La collaboration* (M. A. Éditions, 1987).
- _____, “L'épuration en France, une histoire inachevée”, *Vichy. L'événement, la mémoire, l'histoire* (Gallimard, 2001).
- _____ et Alain Bancaud, “L'épuration des magistrats à la Libération”, *Vichy. L'événement, la mémoire, l'histoire* (Gallimard, 2001).
- Wieviorka, Olivier, “Épuration: la guerre civile n'aura pas lieu”, *Les collections de l'Histoire*, n° 28 (juillet 2005).

〈Résumé〉**L'épuration des fonctions publiques en France**

Yong-Woo Lee

Après «les années noires» (1940-1944), les collaborateurs furent punis et épurés dans plusieurs manières en France. Cette étude a pour but d'examiner «l'épuration administrative», soit les sanctions contre des fonctionnaires et agents d'entreprises publiques, qui ont collaboré avec l'occupant nazi durant «les années noires».

Quant à l'ampleur de l'épuration administrative, les adversaires de l'épuration et le gouvernement présentent des estimations considérablement différentes, «120.000 épurés» et «16.000». Mais en réalité, sur 1 à 1,5 million de fonctionnaires et agents publics, plus de 27.000 (1,8-2,7%) furent sanctionnés.

Cette étude se limite aux deux catégories des fonctions publiques. La première catégorie comporte préfets, magistrats et agents de police qui ont accompli la plus répressive tâche durant «les années noires» et qui auront rempli la tâche d'épuration sous le nouveau gouvernement. La seconde est composée des fonctionnaires ordinaires et agents, surtout dans la préfecture de la Seine et ses annexes, et des entreprises publiques.

Les épurations de ces deux groupes de fonctions publiques sont différentes l'une de l'autre à plusieurs égards. D'abord la durée de l'épuration administrative du premier groupe est beaucoup plus courte que celle du second groupe, parce que le fait de collaboration du premier groupe est bien plus notable ou évident et que l'épuration du premier groupe est beaucoup plus urgente.

La différence dans les motifs de sanction entre les deux groupes est plus importante. Préfets, magistrats et agents de police furent généralement sanctionnés pour des motifs directement liés à leurs services ou postes. Mais les motifs pour l'épuration administrative ordinaire dans la Seine ne sont pas, pour la plupart, directement liés à leurs services. La plupart des fonctionnaires dans la préfecture de la Seine et ses annexes ne furent pas sanctionnés sous prétexte de leurs fonctions publiques comme un fonctionnaire, mais à cause de leurs actes comme un citoyen.

<Summary >**The Purge of Collaborators in the Public Service of Liberated France**

Yong-Woo Lee

After the 'Dark Years' (1940-1944) during which Nazi Germany had dominated France, the purge of collaborators were proceeded in various ways for several years in France. Among the ways of purge, this article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administrative purge' which means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the public servants and employees of public corporations.

As for the scale of administrative purge, although many opponents had insisted that there were 120,000 purged while the government claimed about 16,000 of 1 to 1.5 million civil servants and public employees, in fact, over 27,000 (1.8-2.7%) men and women were disciplined for their collabor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dministrative purge in two sections of public service. The first was the 'purge of purger', that is, the purge of prefects, judges and policemen who had executed the most repressive tasks during the 'Dark Years' and would carry out the purge of collaborators in liberated France. The second one was the purge against ordinary employees of public service, in particular the prefectorial office, its subsidiary offices and public companies in the Seine department.

The first section presented a distinct contrast to the second one in many respects. Firstly, the duration of administrative purge in the first section was much shorter than that in the second. It was because the level of collaboration in the first section had been far more intense, and the purge in this section was much more urgent than in the second section.

It was in the causes of disciplinary measures that the difference in two sections was most striking. Prefects, judges and policemen were generally disciplined for the causes directly related to their services or positions. In contrast, most of public servants belonging to the Seine prefectorial office were not punished for their public posts as a

civil servant, but for their behaviors as a citizen. In addition, in the cases of disciplinary measures related to their services, the issues in question were generally their manners of conduct rather than their services themselves in the two sections. This result reflected the dilemma in which the new French government could not purge all the Vichy public servants in view of the 'legitimacy' of the Vichy government and the necessity to perform the most urgent tasks.

K C I